

학교법인 성광학원

(2022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2 인

1. 일 시 : 2022년 2월 22일(화) 14:00 ~ 15:10(회의소집 통보일 : 2022년 2월 11일)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삼평동 689) 차바이오텍스 33회의실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 임원

- 이사 11인 : 차광렬, 김병수, 김한중, 김승조, 김춘복
정길생, 차원태, 김광중, 강일모, 장성구, 김동익

- 감사 2인 : 한기수, 원형태

○ 결석 임원

- 이사 1인 : 유성준

4. 안 건

제1호 : 감사 선임

제2호 : 사이버대학 설립 재추진

제3호 : 야탑동 수익용기본재산 일부 조건부 용도변경

제4호 : 교원 인사

제5호 : 대학 학칙 및 직제규정 개정

제6호 : 기채〔부속병원〕

제7호 : 리스자금 한도계약〔부속병원〕

제8호 :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9호 : 2022회계연도 예산(안)

제10호 : 대손상각 및 불용자산 처분〔법인, 대학, 부속병원〕

제11호 : 대표서명 임원 선출

5. 회의 내용

(1) 성원보고

○ 김철 사무국장 : 유성준 이사장이 참석 못하게 됨과 이사장이 회의 진행을 김한중 이사에게 위임(정관 제20조)하게 하였음을 설명 한 후 성원 보고를 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2) 개회기도

○ 김병수 이사 : 개회기도를 하다.

서명

(3) 전차이사회 회의록 확인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전차이사회 회의록을 이미 개별적으로 우송해드렸으므로 낭독은 생략할 것을 설명하고 전차이사회 회의록의 확정 여부를 묻다.
- 참석이사 전원 :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찬성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전차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확정함을 선언하다.

(4) 업무보고

- 김철 사무국장 : 전차이사회 안전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다.
- 김동익 총장 : 대학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다. 이어서 특히 사항으로 과학관 뒷편 임야가 창고 등으로 개발되는 사안을 보고하다.
- 이에 대하여 계획대로 개발 될 경우 교육환경 및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임원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하다.

(5) 안전심의

안전 제1호 감사 선임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한기수 감사는 중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감사로 선임될 수 없으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박동혁 전 대원화성 회장을 한기수 추천감사의 후임 추천감사로 추천 받은 것과 기타 감사 선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2022.03.24.자로 임기 만료되는 한기수 추천감사의 후임을 선임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 김병수 이사 : 박동혁 전 대원화성 회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분이므로 그대로 추천감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동의하다.
- 김승조 이사 : 재청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박동혁 전 대원화성 회장이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2년간 추천감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하다.

□ 감사 선임

성명	구분	비고	임기
박동혁	추천감사	신임(한기수 추천감사 감사 후임)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2년

안전 제2호 사이버대학 설립 재 추진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전을 상정하고 요약 설명하다.
- 김춘복 이사 : 작년 신청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

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 장성구 이사 : 재청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사이버대학 설립 재추진 : 내용 별첨

안전 제3호 야탑동 수익용기본재산 일부 조건부 용도 변경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전을 상정하고 요약 설명하다.
- 차원태 이사 : 제2호 안전과 연관된 것으로서 사이버대학 설립에 필요한 교사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 김광중 이사 : 재청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야탑동 수익용기본재산 일부 조건부 용도 변경 : 내용 별첨

안전 제4호 교원 인사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전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하다.
- 김재환 교무처장 : 교원 인사에 대하여 설명하다.
- 김광중 이사 : 본 안전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교원인사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 정길생 이사 : 재청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교원 인사 : 내용 별첨

안전 제5호 대학 학칙 및 직제규정 개정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전을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하다.
- 강형곤 기획처장 : 학칙 및 직제규정 개정안 대하여 설명하다..
- 김춘복 이사 : 대학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정관 및 법개정에 따른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 정길생 이사 : 재청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대학 학칙 및 직제규정 개정 : 내용 별첨

안전 제6호 기채〔부속병원〕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사무국장에게 안전 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전을 상정하고 요약 설명하다.
- 정길생 이사 : 부속병원 리모델링을 통해 임상실습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 강일모 이사 : 재청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기채〔부속병원〕 : 내용 별첨

안전 제7호 리스자금 한도계약〔부속병원〕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사무국장에게 안전 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전을 상정하고 요약 설명하다.
- 김승조 이사 : 부속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 차원태 이사 : 재청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리스자금 한도계약〔부속병원〕 : 내용 별첨

안전 제8호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 설명하다.
- 김춘복 이사 : 본예산 편성 후의 사정변경과 가결산을 기초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동의하다.
- 차원태 이사 : 재청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회계	2021추가경정예산(안) (단위:천원)
법인일반업무	12,485,719
법인수익사업	3,663,952
교비	112,529,817
부속병원	103,186,946

안전 제9호 2022회계연도 예산(안)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전을 상정하고 요약 설명하다.
- 김병수 이사 :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편성되었고, 사이버대학 설립 재추진을 위한 예산도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동의하다.
- 정길생 이사 : 재청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회계	2022예산(안) (단위:천원)
법인일반업무	21,039,577
법인수익사업	4,390,288
교비	123,721,642
부속병원	102,394,509

안전 제10호 대손상각 및 불용자산 처분〔법인,대학,부속병원〕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전을 상정하고 요약 설명하다.
- 김승조 이사 : 대손상각은 연락두절, 시효경과, 재산추적 확인 등의 결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며, 불용자산 폐기 및 매각 처분은 노후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동의하다.
- 김병수 이사 : 재청하다.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대손상각 및 불용자산 처분〔법인,대학,부속병원〕 : 내용 별첨

안전 제11호 대표서명 임원 선출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김춘복, 강일모 이사와 한기수 감사를 제안하자 참석한 모든 이사가 찬성하다.

서
명

(6) 폐회선언

- 김한중 이사(의장직무대행) : 다른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차 광 령

김 병 수

김 한 중

김 승 조

김 춘 복

이사 정 길 성

차 원 태

김 광 중

강 일 도

장 성 구

김 동 의

한 기 성

감사

원 형 태

서
명

안전 제2호 사이버대학 설립 재추진

1. 지난 경과

- 2021.03.30. 설립계획서 제출
- 2021.07.13. 교육부 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
 -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요건 : 적정 또는 기준 충족
 - 중·단기 발전계획의 구체성, 교육서비스 대상자 수요분석,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방법, 원격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계획 구체성 등 : 부족 또는 미흡

2. 재추진 방향

- 학과 조정 : 기존 20개 학과 → 13개 학과, 입학정원(1,990명) 유지
- 교육부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완하여 설립신청서 제출

3. 개요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별말로30번길 43(지번 : 야탑동 222번지)
 - 수익용기본재산 일부 층을 교육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
- 대학명칭 : (가칭) 차 사이버대학교
- 입학정원 : 1,990명 / 설치 학과 : 3개 학부, 13개 학과

학부	학과명
BT 융합학부	바이오나노소재학과
	바이오식의약학과
	스포츠의학과
	임상상담심리학과
	평생건강관리학과
IT 융합학부	AI학과
	의료빅데이터학과
	사이버보안학과
	메타버스게임학과
	디지털디자인학과
비즈니스 융합학부	바이오메디컬경영학과
	글로벌제약산업학과
	핀테크자산관리학과

4.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확보방법	기준 규모	소요예산(안)	
교사(교지) 확보	야탑동 수익용 재산 일부, 2개 층 활용	전용 450평 이상 (실제 사용 공간의 합)	70 ^{*1}	수익용→교육용으로 용도 변경시 대체 재산 보전액
원격교육 설비, 교사 인테리어 등	매입 및 시설 공사	수강학생 7,960명	100	원격교육 설비는 편제 완성기준 구비
계			170	
수익용 기본재산 추가분	신설 사이버대학에 추가로 소요되는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약 120억원은 우리법인이 기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을 감정평가할 경우 정량적 충족은 가능하나, 사이버대학의 재정 안전성과 성장·발전을 위해 120억원을 4년에 걸쳐 30억원씩 확보하고자 함		120	기부금 유치 등으로 확보

- ^{*1}70억 = 야탑동 222, 수익용 건물 2개 층의 감정평가 예상액(토지 지분 포함)
→ 학교법인이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 주식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변경(약 40억원)
+ 부족한 금액(약 30억원)은 기부 수입 등으로 확보하고자 함

5. 일정

- 2022.03.31.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 제출, 승인 신청
- 2022.06.30. 교육부, 설립계획 승인
- 2022.08.31. 「사이버대학설립인가신청서」 제출
- 2022.10.31. 사이버대학설립인가 통보
- 2023.03.01. 개교

6. 추진 : 추진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변경은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차기이사회에서 보고 및 추진



안전 제3호**야탑동 수익용기본재산 일부 조건부 용도 변경****1. 용도변경 할 재산의 표시 및 예상 금액**

- 용도변경 내용 : 수익용기본재산 → 교육용기본재산
- 용도변경 할 재산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지목	용도변경 부분	면적(㎡)	감정평가액
건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22	철근콘크리트	지상 1~2층	3,781	약 70억원 추정
토지			대지	위 해당 지분	981	
계						

- 총 7층(지하2~지상5) 건물의 지상 1,2층만 용도변경하는 것임
- 감정평가액은 이사회 개최일 기준으로 추후 평가하여 정확하게 산출

2. 용도변경 사유

- 사이버대학설립에 필요한 교사 확보

- 확보 기준 및 확보 계획 (단위 : ㎡)

확보 기준		확보 계획(야탑동 222 건물 1,2층)	
입학정원	전용 면적 ^{*1}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전용 면적
1,990명	1,485㎡ (450평)	3,153.71㎡ (954평)	2,216 (670평)

^{*1}전용 면적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제1항 별표 1

* 계단, E/L, 복도, 로비 등 공용 제외한 실 사용 면적

- 2022년 4~5월 중에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조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으로써, 6월에 사이버대학설립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즉시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보전 계획

○ 기본 방향

- 용도변경(수익용기본재산→교육용기본재산) 부분 재산의 평가액이 법인 보유 전체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에서 차감된 결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100%에 미달되는 경우, 미달분에 해당하는 대체재산 확보 필요
- 100% 충족되는 경우라도 교육부의 용도변경 허가 조건이 대체재산 확보인 경우 그에 따름

○ 대체재산 확보(약 70억원)가 필요한 경우

- 확보 방안 :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 주식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변경(약 40억원) + 부족한 금액(약 30억원)은 기부 수입 등으로 충당
- 시기 :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2022. 6. 30.까지) 후 주식의 수익용기본 재산 편입 및 기부금 수증 등 의결
- 기타 : 주식 평가액은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의 허가 내용에 따름

4. 재산보유 현황(2021. 4. 1. 기준 한국사학진흥재단 보고) (단위:백만원)

구분	교육용기본재산(편제정원 기준)						수익용기본재산		
	교 지(m ²)			교 사(m ²)					
	기준	보유	확보(%)	기준	보유	확보(%)	기준	보유	확보(%)
현재	76,978	96,641	125.5	38,489	40,519	105.3	75,429	80,122	106.2

* 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은 일부 수익용기본재산만 감정평가한 금액임

5. 일정(안)

- 2022. 3. 31.까지 성광학원,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서」 제출
- 2022. 4~5. 성광학원, 용도변경 허가 신청
교육부,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조건 용도변경」 허가
- 2022. 6. 30.까지 교육부,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 2022. 7. 성광학원, 법인 보유 전체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 2022. 6. 30.이후 성광학원, 용도변경(이사회) 및 교육부 허가사항 이행

안건 제4호 교원 인사

【 총 괄 】

(단위:명)

구분		인원	비고
전임 교원	재임용	임상 109	교수 8, 부교수 20, 조교수 81
		비임상 28	교수 2, 부교수 13, 조교수 13
	소계	137	
초빙 교원	재임용	25	초빙교수 1, 초빙부교수 5, 초빙조교수 19
	소계	25	
계		162	

1. 전임교원, 재임용 137명(임상 109, 비임상 28)

[임상]

NO	성명	구분	비고
1	임	정년)	
2	김	년	
3	나	년	
4	이	년	
5	이	년	
6	홍	년	
7	강	년	
8	김	년	
9	김	년	
10	양	년	
11	이	년	
12	이	년	
13	이	년	
14	이	년	
15	전	년	
16	차	년	
17	최	년	
18	황	년	
19	이	정년)	
20	김	년	
21	이	년	
22	김	(정년)	
23	장	년	
24	김	년	
25	허	년	
26	황	년	
27	김	년	
28	이	년	

서명

29	노		정년)	
30	오		정년)	
31			년	
32	오		년	
33	공		년	
34	각		년	
35	각		년	
36	각		년	
37	각		년	
38	각		년	
39	산		년	
40	오		년	
41	각		년	
42	현		년	
43	현		년	
44	각		년	
45	오		년	
46	산		년	
47	각		년	
48	각		년	
49	고		년	
50	각		년	
51	조		년	
52	각		정년)	
53	각		년	
54	각		년	
55	각		년	
56	각		년	
57	박		년	
58	천		년	
59	노		년	
60	박		년	
61	각		년	
62	각		년	
63	연		년	
64	각		년	
65	각		년	
66	각		년	
67	각		년	
68	각		년	
69	산		년	
70	각		년	
71	박		년	
72	오		년	
73	각		년	
74	윤		년	
75	오		정년)	
76	각		년	

77	김		
78	방		
79	정		
80	정		
81	조		
82	권		
83	권		
84	김		
85	김		
86	김		
87	김		
88	김		
89	김		
90	김		
91	김		
92	김		
93	김		
94	나		
95	박		
96	박		
97	박		
98	서		
99	양		
100	오		
101	유		
102	윤		
103	윤		
104	이		
105	이		
106	정		
107	조		
108	조		
109	하		

[비임상]

NO	성명	
1	석민	
2	김민	
3	김민	
4	이민	
5	정민	과
6	김민	과
7	김민	
8	박민	과
9	장민	과
10	김민	과

11	박		객
12	윤		
13	Wood Ma		객
14	엄		객
15	장		객
16	황		객
17	손		
18	최		
19	한		
20	나		
21	김		
22	송		
23	이		객
24	김		객
25	문		
26	임		
27	고		
28	조		

2. 초빙교원, 새임용 25명

NO	성	간
1	김	
2	최	
3	한	
4	김	
5	문	
6	이	
7	Finu John	
8	Jos	
9	김	
10	방	
11	이	
12	김	
13	최	
14	이	
15	이	
16	안	
17	이	
18	김	
19	정	
20	김	
21	라	
22	공	
23	임	
24	최	
25	함	

3. 추인 : 금회 임용 이후, 차기 이사회 개최 때까지 이루어지는 부득이한 교원 임용은 이사장과 총장에게 위임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

서
명

1. 학칙 개정

가. 배경 및 이유

- 고등교육법 제19조의 3(인권센터) 신설 <개정 2021.3.23.>

제19조의3(인권센터)

-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 ·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개정 2021.3.23.>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둬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27조: 등록금 및 장학금 반환 기준에 따른 학기 개시일의 구체적 명시
- 제32조: 교육과정(교과목) 구분 세분화로 인한 규정 개정
- 제33조의5: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인정을 위한 근거 마련
- 제55조: 약학대학 학제 전환(통합 6년제)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을 반영

나. 주요 내용

- 양성평등센터 : 인권센터로 변경
- 소수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변경
- 학기 개시일 구체적 명시 : 1학기 3월 1일 ~ 8월 말일, 2학기 9월 1일 ~ 2월 말일
-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인정

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 부속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 2. (생략) 3. <u>소수학생지원센터</u> <개정 2015.2.1., 2016.5.1.> 4. ~ 11. (생략) 12. <u>양성평등센터</u> <신설 2016.1.1.> 13. ~ 17. (생략) ② 부속기관에는 기관장을 두며, 그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속기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u>장애학생지원센터</u> <개정 2015.2.1., 2016.5.1., 2022.2.22.> 4. ~ 11. (현행과 같음) 12. <u>인권센터</u> <신설 2016.1.1.> <개정 2022.2.22.> 13. ~ 17. (현행과 같음) ② -----, -----.
제27조 (학년도, 학기) ① 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학년도의 수업은 4주의 범위 내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 ② 각 학년도는 2개 학기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4개 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27조 (학년도, 학기) ① 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학년도의 수업은 4주의 범위 내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 <삭제> ② 각 학년도는 2개 학기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업은 학기 개시일부터 2주의 범위 내에서 개강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 (교육과정 및 교과목)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각 대학 및 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른다.	제32조 (교육과정 및 교과목) ① 교과목은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구분하고, 해당 교과목의 필수 및 선택의 구분은 각 교과과정에 따른다. 다만, 일반선택 교과목에는 교직과목 등을 포함한다.<개정>
<신설>	제33조의5 (온라인 공개강좌 인정학점) ① 학점인정 가능 온라인 공개강좌 제공 기관에서 업로드한 강좌를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인정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5조 (학년수료) ①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는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졸업학점의 1/4, 2학년 졸업학점의 1/2, 3학년 졸업학점의 3/4 ② (생략)	제55조 (학년수료) ①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는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 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한다. $(\text{수료학년/학과수업연한}) \times \text{학과졸업학}$ 점 <개정> ② (현행과 동일)
부칙 <신설>	부칙 (2022.2.2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라. 시행일 : 2022. 2. 22.

2. 직제규정 개정

□ 금회 이사회 일자(2022. 2. 22.) 개정·시행 사항

가. 배경 및 이유

- 고등교육법 제19조의 3(인권센터) 신설 <개정 2021.3.23. 2022.3.24. 시행>

제19조의3(인권센터)

-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 ·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개정 2021.3.23.>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두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주요 내용

- 양성평등센터 : 인권센터로 변경
- 소수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변경

다. 신규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을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1. ~ 2. (생략) 3. <u>소수학생지원센터</u> <개정 2015.2.1., 2016.5.1.> 4. ~ 11. (생략)	제16조(부속기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u>장애학생지원센터</u> <개정 2015.2.1., 2016.5.1., 2022.2.22.> 4. ~ 1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2. 양성평등센터 <신설 2016.1.1.>	12. <u>인권센터</u> <신설 2016.1.1.> <개정 2022.2.22.>
13. ~ 17. (생략)	13. ~ 17. (현행과 같음)
② 부속기관에는 기관장을 두며, 그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② -----, -----.
	부 칙 (2022.2.2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시행일 : 2022. 2. 22.

□ 추인(2021. 12. 10. 개정·시행, 이사장 사전 승인 사항)

가. 배경 및 이유

- 정관개정(2021.11.12.)에 따른 산학협력부총장 신설
- 팀제 운영 명문화

나. 주요 내용

-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연구부총장 외에 산학협력부총장 신설
- 각 처 소속 팀 신설
 - 기획처 : 기획예산팀, 평가팀, 법무감사팀
 - 교무처 : 교무팀, 학사지원팀
 - 학생지원처 : 학생지원팀, 장학팀
 - 입학홍보처 : 입학팀, 홍보팀
 - 연구처 : 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 총무처 : 총무팀, 구매관재팀, 시설관리팀, 재무팀

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총장) ① 부총장은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연구부총장 각 1인을 둔다. ② ~ ④ 생략 ⑤ 연구부총장은 일반대학원, 연구, 산학협력, 해당 부속·부설기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총장은 필요한 경우 부총장 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부총장) ① 부총장은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연구부총장, <u>산학협력부총장</u>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1.12.10> ② ~ ④ 생략 ⑤ 연구부총장은 일반대학원, 연구, 산학협력, 해당 부속·부설기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12.10> ⑥ <u>산학협력부총장은 산학협력, 해당 부속·부설기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u> <신설 2021.12.10> ⑦ 총장은 필요한 경우 부총장 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행정부서) ① ~ ③ 생략	제6조(행정부서) ① ~ ③ 생략 ④ <u>각 행정부서는 팀제로 운영한다.</u> <개정 2021.12.00> ⑤ <u>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 등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상급직급의 하위직급으로 할 수 있다.</u> <개정 2021.12.10>
제7조(기획처) 기획처는 대학교의 발전계획, 조직·정원, 규정, 법무, 감사, 예산편성,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기획처) ① 기획처는 대학교의 발전계획, 조직·정원, 규정, 법무, 감사, 예산편성,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u>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처에는 기획예산팀, 평가팀, 법무감사팀을 둔다.</u> <개정 2021.12.10>
제8조(교무처) 교무처는 대학교의 교무, 학사, 교원에	제8조(교무처) ① 교무처는 대학교의 교무, 학사, 교원에

현 행	개 정 (안)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처에는 교무팀, 학사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1.12.10〉
제9조(학생지원처) 학생지원처는 학생지원 및 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학생지원처) ① 학생지원처는 학생지원 및 지도, 장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지원처에는 학생지원팀, 장학팀을 둔다. 〈개정 2021.12.10〉
제10조(입학홍보처) 입학홍보처는 입학과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대학원 입학은 해당 대학원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입학홍보처) ① 입학홍보처는 입학과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대학원 입학은 해당 대학원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홍보처에는 입학팀, 홍보팀을 둔다. 〈개정 2021.12.10〉
제11조(연구처) 연구처는 연구기획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연구처) ① 연구처는 연구기획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처에는 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1.12.10〉
제12조(총무처) 총무처는 총무, 구매, 직원인사, 시설관리 및 기타 학교 일반관리, 재무, 예산집행과 각 회계의 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총무처) ① 총무처는 총무, 구매, 직원인사, 시설관리 및 기타 학교 일반관리, 재무, 예산집행과 각 회계의 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처에는 총무팀, 구매관재팀, 시설관리팀, 재무팀을 둔다. 〈개정 2021.12.10〉

라. 시행일 : 2021. 12. 10.

안전 제6호 기재[부속병원]

1. 기재 이유

- 교육시설 안전강화 및 고객 니즈에 맞는 진료·교육 환경 구축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 기재처 : 제1금융권(신한은행)

3. 기재 용도 및 신청액

용도	구분	신청액
병동 리모델링	시설대출	25억원

4. 기재조건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연 3.99%(5년 고정금리)	5년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위 이자율은 2022.02.15.기준 제안 받은 이자율이며 차입시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담보 : 없음

안전 제7호 리스자금 한도계약[부속병원]

1. 한도 계약 이유

- 부속병원의 신규 및 노후교체 의료 장비를 리스자금 한도 계약 방식으로 확보하고자 함

2. 계약 기관 : 롯데캐피탈

3. 리스구매 한도 금액

용도	구매회계	리스구매 한도액
의료장비 확보	부속병원	14억원

4. 리스 조건

리스기간	지급방법	비고
5년	원리금 균등 지급	무담보 신용

5. 기타 : 리스자금 한도계약은 교육부 허가사항은 아니며, 계약체결에 이사회 의결서가 필요함

안전 제10호 대손상각 및 불용자산 처분[법인,대학,부속병원]

1. 대손상각

가. 법인 수익사업 (단위:원)

구 분	건 수	금 액	사 유
연체 임대료	1	21,757,980	• 역삼제3사업소 임차인 박○○ 연체 임대료(2018.1~2019.12.) • 2019.12.02. 강제집행 명도 • 2020.1~2021.9. 임차인 재산확인 절차(의정 부지방법원), 재산없음으로 확인

나. 부속병원

구 분	건 수	금 액	사 유
입 원	12	2,598,120	연락두절, 사망, 시효경과 등
외 래	468	11,482,130	
건 진	4	800,614	사업체 파산
계	484	14,880,864	

2. 불용자산 처분

가. 대학 : 2021년 1월, 관재심의위원회에서 내용연수(5년) 초과 비품과 재물조사(2020년) 결과에 따른 불용 비품 대하여 처분 결정

○ 비품 폐기 (단위:원)

구 분		품 명	수량	자산가액			폐기 사유
				취득가	상각누계액	잔존가	
내용 연수 外	기계 기구	컴퓨터 등 (1996~2016 매입)	-	10,814,684,378	10,814,684,378	0	불용
	집기 비품	안내데스크 등 (1996~2016 매입)	-	6,376,620,235	6,376,620,235	0	
	소계			17,191,304,613	17,191,304,613	0	
내용 연수 內	기계 기구	프린터기 (2017~2020 매입)	1	198,000	188,100	9,900	불용
	집기 비품	파일박스 등 (2017~2020 매입)	3	3,390,000	3,229,700	160,300	
	소계		4	3,588,000	3,417,800	170,200	
계			4	17,194,892,613	17,194,722,413	170,200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내구연수 : 5년 / 감가상각 : 22.2.28 기준

○ 도서 폐기

(단위:원)

유 형	도 서 명	수 량	장부가액	
			취득가	잔존가 (감가상각 후)
도서 단행본	The Proe system 외	7,294	107,000,000	-
계		7,294	107,000,000	-

* 폐기 진행시 약 1,500,000원 수익금 발생

나. 법인(비품 폐기)

(단위:원)

구 분		품 명	수량	자산가액			폐기 사유
				취득가	상각누계액	잔존가	
일반 업무 회계	기계 기구	컴퓨터 등 (1996~2007 매입)	55	1,073,349,750	1,073,349,750	0	불용
	집기 비품	실험대 등 (1996~2007 매입)	22	130,233,830	130,233,830	0	
	소계		77	1,203,583,580	1,203,583,580	0	
수익 사업 회계	기계 기구	컴퓨터 (2002~2005 매입)	2	2,840,000	2,840,000	0	불용
	집기 비품	파일박스 등 (2008년 매입)	2	3,435,000	3,435,000	0	
	소계		4	6,275,000	6,275,000	0	
계			81	1,209,858,580	1,209,858,580	0	

*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내구연수 : 5년

다. 부속병원

○ 의료장비·비품 폐기

(단위:원)

구 분	품 명	수량	자산가액			폐기 사유
			취득가	상각누계액	잔존가	
의료장비	Cardiac PACS외	59	542,174,594	473,922,675	68,251,919	불용
공기구비품	환자용 침대외	2	15,520,000	15,435,666	84,334	
계		61	557,694,594	489,358,341	68,336,253	

○ 매각

(단위:원)

차종	구입년도	차량번호	용도	장부가액	
				취득가	잔존가 (감가상각 후)
모닝	2013년 10월	26더7715	업무	11,764,800	1,000
아반떼	2017년 11월	11더2468		18,259,980	2,434,664

* 차량운반구 내용연수 : 5년

* 2022년 상반기 중, 처분 견적을 통해 매각하며 처분 시점 및 금액은 부속병원장에게 위임

서
명